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원감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
 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, 제4조)
  -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, 제7조, 제8조)
-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함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 가. 제출배경

- 우리 도는 본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에게 ha당 9만원을 지원하고 있음
- 개정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 되었음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 수정

(현행)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→ (개정)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-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(2015.6.22. 법률 제13383호)이 제정되어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」의 제명 변경 및 내용 정비
- 개정조문 :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제 4조

(현행)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

→ (개정)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- 2020년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관련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 변경 및 내용 정비
- 개정조문 : 제5조, 제7조, 제8조

-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